

평화교육 지원법안
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7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송옥주 · 김영배
최혁진 · 장경태 · 문진석
김교홍 · 윤종균 · 김태년
한민수 · 윤후덕 · 신영대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.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해 원점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방법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 휴전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실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,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경각심 저하 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. 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,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

한편,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 · 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이 법에서 “평화교육”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,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,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(안 제2조).
- 다.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하고 개인적 ·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(안 제3조).
- 라.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마.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 주간으로 함(안 제7조).
- 바.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

관리위원회를 둠(안 제8조).

사.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로 지정하고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.

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·장비·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,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
자.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하는 자 또는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
차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
카.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

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(안 제15조).

평화교육 지원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·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평화교육”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,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,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평화교육의 기본원칙) ①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한다.

② 평화교육은 개인적·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내에서 평화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평화와 인권,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평화교육의 내용이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·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비폭력대화 등 평화적인 소통 방식을 확산하여 일상 속 갈등예방 및 사회전반의 평화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평화교육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는 평화교육 교재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평화교육의 핵심개념) ① 국가는 평화교육의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해당 개념이 평화교육을 위한 교재 등에 반영·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평화교육의 핵심개념은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개념과 실제사례, 교육방법론,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.

제6조(평화교육의 추진)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1.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
2. 평화교육 연구의 진흥
3. 평화교육 인력의 양성·활용
4. 평화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·보급
5. 평화교육에 수반되는 자원 조달·집행계획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평화교육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제7조(평화교육주간)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
째 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한다.

제8조(평화교육관리위원회) ①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다음 각
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평화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
3.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평화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
5. 평화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
6. 그 밖에 평화교육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항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
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
3. 평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·학
계 및 언론계에서 각각 1명씩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
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·시설(이하 “기관등”이라 한다)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(이하 “평화교육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평화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시설, 예산, 인력,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평화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)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평화교육센터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평화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
2. 제9조제2항에 따른 평화교육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3.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

제11조(평화교육센터의 지정취소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평화교육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·장비·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(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평화교육의 수강 요청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하는 자 또는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평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예산의 반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15조(관계 기관의 협조)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